

**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**

|         |  |
|---------|--|
| 서류제출 기한 | 2022년 1월 4일(화) ~ 1월 15일(토) 16시 도착분까지 (반드시 지정된 기간내 서류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.)   |
| 제출방법    | 건본주택 방문접수  |
| 수신처     |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800-19 (대표번호 1800-3430)   |
| 유의사항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 37.5도 이상 고객은 방문이 불가합니다.</li> <li>• <b>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건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</b></li> <li>•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</li> </ul> |

**■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출 서류**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유형        |          | 해당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 기준     |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|---|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         | 추가 (해당자) |  |           |   |  |
|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서류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신분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| 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주민등록표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|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 변동사항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주민등록표초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| •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인감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| • 용도에 「아파트 계약용」으로 직접 기재(반드시 본인발급용으로 발급진행)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인감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| •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<br>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(본인 직접 계약에 한함)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|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출입국 사실 증명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|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또는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<br>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및 직계비속 | •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·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<br>• 만 18세 이상인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복무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| 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주민등록표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우자       | •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주민등록표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녀        | •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<br>•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주민등록표초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피부양 직계존속  | •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<br>•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 변동사항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기본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녀        | • 자녀의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한부모 가족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| • 청약신청자가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제3조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| ○        |  | 가족관계증명서   | 배우자   | • 배우자의 전혼자녀 확인 시(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○        |  | 가족관계증명서   | 피부양 직계존속  |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3세대 이상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<br>• 성명, 주민번호 (뒷자리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○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또는 배우자 | 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(임신진단서) 제출<br>※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.   |  |
| ○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출산이행 확인각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또는 배우자 | • 건본주택 비치   |  |
| ○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              | 본인 또는 배우자 | • 입양의 경우  |  |
|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•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(가족대상등본 포함)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무허가건물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|          |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|           |   |  |

※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  
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 
 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 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 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